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5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유상범·박준태·조배숙

장동혁 • 주진우 • 정점식

곽규택 • 박상웅 • 김미애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법제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 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며, 인공지 능을 이용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생성 AI)에서의 오류 발생 최소화 등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민간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법령정보시스템에서법원 판례를 수집·제공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제4항 및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구축·운영"을 "구축·운영 등"으로 한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위하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 ②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법령정보의 제공

- 2. 기술개발의 지원
- 3. 사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원활한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방안,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3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u>.</u>	
가. <u>헌법재판소 결정례</u> , 행정	가.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	<u> 결정례</u>	
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① (생 략)	운영)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	
	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	
	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의 기술	
	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	
	<u>다.</u>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u>⑥ ------제5항</u>-----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및 활용 촉진) ① (생 략)
 - 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 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 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 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 다.

<신 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

항까지와 같음	항까	지와	같음)
---------	----	----	-----

- ----구축·운영 등-----
-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① (현행과 같 유)
 -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ㅣ ②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하여 법령정보를 다 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 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 공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법령정보의 제공
 - 2. 기술개발의 지원
 - 3. 사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 활성화의 지원
 -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원 활한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방안,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 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u>위하여</u>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u>까지</u>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u>라</u>	·